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8441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성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김대영, 박항규, 윤기상, 지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효경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C과 각자 원고에게 100,1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1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2021. 7. 21. 소외 C과 사이에 C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D 건물에 C이 설치한 고철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C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고철을 수거·매수하되 원고가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소외 C은 고철 금액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C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21. 6. 30. 피고 명의의 계좌에 115,000,000원을 이체하고, C의 머느리 E의 계좌에 8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5.부터 2021. 7. 24.까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134,874,400원 상당의 고철을 수거하였으나, 나머지 고철은 2022. 6. 30.경 다른 회사에 의하여 철거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C을 피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803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령한 매매대금 2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일부 고철을 수거하여 이익을 얻은 99,874,400원(=134,874,400원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00,1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으며, 소외 C은 항소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외 C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위 판결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C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설령 피고가 소외 C을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혹은 소외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원고로부터 115,0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금 115,000,000원을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다툰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 보증인란에는 'B'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보증인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C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설령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만으로 실제로 피고가 보증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친인 C이 피고의 서명과 사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의사로 보증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C이 신용불량문제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하거나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C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지미